

포장폐기를 발생억제를 위한 실무편람 ②

II. 포장폐기를 발생억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제정 1993. 8.17 총 리 령 제430호
 개정 1995. 2. 6 환경부령 제 4 호
 개정 1999. 2.19 환경부령 제 68 호
 개정 2003. 4. 3 환경부령 제1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

니할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③제조자등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란·매추리알
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④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

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자원재생공사
2.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 또는 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크기·형태 및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다음 각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중 샴푸·린스류 :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70
6. 크레용·크레파스·뿔감 : 100분의 10

②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

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 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

터·도매센터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관련)

[별표 1]

제 품 의 종 류		기 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1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35%이하)	2차 이내
		건강보조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항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0%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허리띠에 한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

1. "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라 함은 단위제품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단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날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날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

- 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 서 제외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 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단위제품으로 종이·골판지·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각각의 포장공간비율에 5를 더한 값으로 한다.
 6. 종합제품으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포장공간비율에서 5를 뺀 값으로 하며, 종이·골판지·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포장공간비율에 5를 더한 값으로 한다.
 7.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A 1005-2001)에 의한다.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제6조관련)

[별표 2]

포 장 재 질	1차(내부) :	2차(외부)
포 장 공 간 비 율	% (기준 :	% 이하)
포 장 횟 수	% (기준 :	차 이내)

비고 :

1. 포장재질은 포장차수 또는 내·외부 포장재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명·검사일자 및 검사번호 등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3. 위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관련)

1. 영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

제품의 종류	대 상 포장재	기 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이후
가.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닭사육 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난 좌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팩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나.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 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 여 거래되는 사과·배	받침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다.매장면적 165㎡ 이상의 판매업 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축 산부류·수산부류	받침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라.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	용 기	20% 이상	30% 이상	35% 이상

비고 :

-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비율을 합한 것으로 한다.
-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은 당해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 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은 당해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대비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의 감소율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4년·2005년	2006년·2007년	2008년이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포장용 완충재	포장용적 2만 ^{cm³} 이하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	포장용적 3만 ^{cm³} 이하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	포장용적 4만 ^{cm³} 이하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

비고 : 제조자들은 포장용적이 당해 연도 줄이기 대상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으로서 10만^{cm³} 이하인 제품에 대하여 발포폴리스티렌재질의 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